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서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박현준

전화 02-3270-4395

보도자료

2022. 4. 6.(수)

제 목

아파트 청약통장 불법 매매 및 부정 청약 사범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(부장검사 이근형)는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와 분양가의 차액이 큰 이른바 '**로또 청약**' 열풍을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고,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부정 청약하여 당첨됨으로써 4억 7,500만 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주택법위반 사범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추가 인지하여 3명을 구속 기소, 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- 또한, **당첨된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, 청약자격제한 등의 조치**가 이루어지도록 주택법위반 사항을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였음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1] 피고인

- 부정청약 조직 총책 : A(31세, 구속 기소)
- 부정청약 조직 현장브로커 : B(31세, 구속 기소), C(31세, 불구속 기소), D(30세, 불구속 기소)
- 부정청약 조직 전화상담원 : E(30세, 불구속 기소)
- 부동산중개 브로커 : F(52세, 구속 기소)
- 청약통장 매도자 : G(35세, 불구속 기소)

② 공소사실 요지

- A, B, C, D, E, F는 공모하여, 2020. 3. ~ 2021. 5. 청약통장 매수를 위하여 인터넷, 전화 광고 1,899회하고, 청약통장 28개를 불법 매수하며,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13회 부정 청약하여 당첨됨 [주택법위반]
 - A, B, C, F는 공모하여, 전매목적으로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청약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13회 분양받아 피해자 현대건설 등의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 [업무방해]
 - G는 A로부터 1,500만 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매도 [주택법위반]
- ※ A, B, C, F는 위와 같이 청약통장을 불법 매수하고,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합계 4억 7,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음

2 수사 경과

- 2021. 11. 9. 서울시경, 피고인 F를 주택법위반죄로 구속 송치, 피고인 C, D, E, G를 주택법위반죄로 불구속 송치
- 2021. 11. 26. 서울서부지검, 피고인 F를 주택법위반죄로 구속 기소, 피고인 C, D, E, G를 주택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
- 2022. 3. 18. 서울시경, 피고인 A, B를 주택법위반죄로 구속 송치
- 2022. 4. 1. 서울서부지검, 피고인 A, B, C, F 조사 및 업무방해죄 추가 인지
- 2022. 4. 6. 서울서부지검, 피고인 A, B 업무방해죄 및 주택법위반죄로 구속 기소, 피고인 C, F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

3 수사 결과

- 검찰은 주택법위반죄로 송치된 사건에서, 분양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추가 인지하여 기소하였고,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 4억 7,500만 원을 추징할 예정임
- 또한, 부정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, 청약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위반 사항을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였음

4

향후 계획

- 향후에도, 서울서부지검은 부동산시장 교란사범에 **엄정 대응**하는 한편, **범죄수익을 환수**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☑